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6.

발 의 자 : 박세채 · 구자근 · 길윤옥
김상조 · 우진석 · 윤서규
이갑선 · 정근수 · 허 복
황경환(10인)

1. 제 안 이 유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장학금지급 대상학력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삭제하고 「고등학교」로 조정 (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조정 (안 제2조)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장학생 선발의 중·고등학교 배정비율 삭제 (안 제4조제2항)

3. 참 고 사 항

-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2조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중·고교”를 “고교”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u>중·고등학교</u> 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u>고등학교</u>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u>중·고교</u>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같음한다 2.(생략)	제2조(장학생의 자격)..... <u>1년</u> 1. <u>고교</u> 2.(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제4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현행과 같음)

참 고 법 령

□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통·리장 및 반장의 임기) 통·리 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llegible]